"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967
등록일자	2015.8.24.
결재일자	2015.8.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송창근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8/25 주윤중	
협조자	도시계획과장	代김근태			
	건축과장	박은섭			

- 주요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의를 위한 -

2015년 제2차 강남구 투자심사 계획

□ 투자심사 대상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사업 (2 이상의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시비 포함사업도 해당, 단 시비가 30억 이상일 때 시 심사의뢰)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 다만,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으로써 외국차관도입사업 및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 대상〕

□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 예산 편성 불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강 남 구
(기 획 예 산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64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자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경예산 편성 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투자사업 심사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참석수당 : 100,000원(기본) x 10명(위촉직 위원) = 1,00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투자 사업과 관련된 자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O〕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O) • 투자대상사업 파악 등 관련부서와 협조 예정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내 자치구 모두 시행중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투자대상사업 심사시 전문외부위원 10명 위촉

- 주요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의를 위한 -

2015년 제2차 강남구 투자심사 계획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64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투자심사의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1992년 도입된 제도

○ 주요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 효율성 등을 심사

Ⅱ 투자심사 대상 및 시기

신규심사 대상사업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 투자단위 사업임

※ 다만, 긴급히 시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총사업비에는 설계비, 보상비, 입찰공고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 구입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계상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 이전에 반드시 구입이 필요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도 포함됨

투자사업의 범위

○ 투자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

※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함. 단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前단계까지 심사의뢰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 ☞ **행정자치부 심사매뉴얼은 실시설계 용역 前단계까지 심사의뢰**
>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심사의뢰 시기 조정('10.8.5부터 시행)]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

○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Ⅲ 투자심사 세부추진사항

1. 심사대상사업

최초(신규)심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써 전액 자체재원 (자치구비,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단, 전액자체재원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전액자체재원이 아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 자체재원에 특별교부금 제외하고,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등 각종 부대 경비를 포함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재 심 사

○ 심사시기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 계약 : 主계약을 의미(용역계약 ·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다만, 설계변경 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심사대상

- (사업 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 투자심사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 ((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 재원계획 변경

-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 · 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시점 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 사업부지 변경

-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제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제1항 개정('14.11.28. 행정자치부령 제4호)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사기준은 '14.11.29. 이후 신규 투자심사를 수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며, '14.11.28.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사 조치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변경된 사업비가 시 · 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 (조정) 시 · 도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시 · 도 → (조정) 중앙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부적정으로 결정되어 재상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투자심사 기관에 심사를 의뢰. 다만,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심사제외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사업 (붙임 #1 참조)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 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대상 포함

-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실질적인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나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 재해· 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부동산(동산)의 취득 ·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 · 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3. 심사절차 및 일정

- **심사방법** : 심사자료 사전 배포 후 서면심사 실시
- **심사내용** : 투자대상사업의 적정성 심사
- **심사절차**

- **심사세부일정**

구 분	9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심사의뢰서 제출																				
심사의뢰서 검토																				
심사자료 사전배부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4.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 구성현황 : 총 14명
  - ○ 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 ○ 위촉직 위원 : 총 10명(투자 심사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 간 사 :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5. 심사기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 ☞ 현재 공공서비스(시설물) 현황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상위계획 또는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동종 공공시설과의 비교 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 총비용 및 단위당 단가비교 등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사업시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 사업수혜계층 및 수혜지역 등 지역간 균형분석 ☞ 주민의 접근성 여부 등 시설입지의 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 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등 정치적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행정적 가능성 ☞ 국비 및 시비 조달계획 등 재원 조달 가능성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기타 사업 추진 제약요인
종 합 적 인 평 가 · 분 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의 승인취득, 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시행준비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 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6. 심사결과 반영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 건 부 추 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 적 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7.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토지매입, 설계,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공사, 조경 등으로 구분
  -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타당성 조사
  -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또는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 시행
  - ○ 센터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수행하고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Ⅳ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

1.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의 투자 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도 구 재원이 포함된 경우 투자심사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①부동산의 취득, ②부동산의 형태 · 형질 변경, ③구조의 변경, ④시설물의 설치(구축) 또는 철거, ⑤동산을 취득 ·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2. 행사성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시설물 · 구조물 등을 임시적 · 일회성으로 설치 · 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함

  ※ 국가주관 행사로 해당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 구체적으로는 ①구민의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 체육대회 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 기념행사 ⑧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 주관행사 등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3. 홍보관사업

-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봄 (복합시설물의 경우 홍보관 면적이 75% 이상일 때)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ex)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재축, 리모델링(증축, 개축, 대수선) 등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됨
  -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 (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를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

5. 문화 · 체육시설 신축

- 문화·체육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되며
  -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 ※ 신축범위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다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제외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청사신축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관>

○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사업 ☞ 시 의뢰심사
- 100억원 이상사업 ☞ 중앙 의뢰심사

○ 전액(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자체재원인 경우 ☞ 시 의뢰심사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됨
-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확약(소위 책임분양)', '토지리턴제 확약'등과 같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등을 포함 산정

V 심사의 종류

1. 심사기관별

자체심사 (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써 전액 자체재원(자치구비, 단 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자체재원에 특별조정교부금 제외하고,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등 각종 부대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공통사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 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의뢰심사(서울시·중앙)

○ 서울시 심사(자치구 → 서울시)

-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자치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중앙심사[자치구, 서울시(사업부서) → 서울시(재정담당관) → 행정자치부]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의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단, 전액 시비 또는 전액 자치구비와 시·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시행하는 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 또는 자치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 사업, 해외 투자사업

< 중앙투자심사의뢰 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

○ 대상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市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
※ 시 재정부담이 없는 자치구사업은 제외(예 : 국비+구비, 구비+의존재원 등)

○ 적용 : 중앙심사 의뢰여부는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으로 市 투자심사 상정

< 사업비가 다수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심사기관 >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2. 심사시기별

최 초 심 사	☞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이전
재 심 사	☞ 최초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착공 후 심사기준 금액 이상 증액되는 경우 각 단계에서 심사 의뢰
재 상 정 심 사	☞ 최초심사 및 재심사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심사 의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단 계 심 사	☞ 개념 :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당초 심사 후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대상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심사 시 조건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

VI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금1,00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기본) x 10명(위촉직 위원) = 1,000,000원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업무추진, 성과주의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투자심사 자료 제출기한 준수 : 2015. 09. 10.(목)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용역 전(前) 단계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함*

○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투자심사 전 사전절차 이행

○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500억원 넘는 경우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철저

○ 투자심사의뢰서는 투자심사매뉴얼을 참고, 각종 자료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심사제외 대상사업 1부. 끝.

□ 붙임 #1 <개정 2014.11.28.>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 · 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18. 문화재 보수 · 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